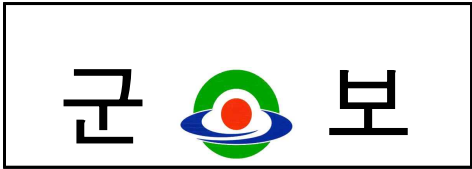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45호 2024. 7. 15.(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166호)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167호)
-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17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군 공고 제2024-1166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예 천



1. 조례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를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 확대 및 육아시간 대상, 기간 확대와 더불어 보육휴가를 도입하여 가정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안 제21조)

-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 : 5세 이하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시간 사용기간 : 24개월 → 36개월

나. 보육휴가 관련 규정 신설(안 제21조)

-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연간 5일 범위 내 보육휴가 부여

다. 공무원 연가일수 변경(안 별표 4)

-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재직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 15일 → 1년 이상 3년 미만 재직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 16일

라. 경조사 휴가 확대(안 별표 6)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 1일→3일

4. 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hong0516@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30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 054-650-68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4개월”을 각각 “36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4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제15조제1항 관련)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결혼준비 포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특별휴가) ① (생략)	제21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⑤ 삭제	
⑥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⑥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 ----- --. ----- 36개월-----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 ⑭ (생략)	⑦ ~ ⑭ (현행과 같음)
<신설>	⑮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예 천



1. 조 례 명 :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 법령상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 수의매각 요건 및 대부요율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대부요율 정비(안 제28조)

- 공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시 대부요율 1% 적용 기준 요건 완화
- 지역경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시 대부요율 적용 규정 신설

나. 공유재산 대부료 등 감면 규정 정비(안 제32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등에 따른 대부료 등 감면 규정 신설

다. 대부료 등 분납 가능 규정 정비(안 제35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대부료 등 분납 기준 금액 및 기간 정비

라. 공유재산 수의매각 가능 규정 정비(안 제40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업 추진에 따른 수의매각 규정 신설

마. 불부합 용어 정비 및 오탈자 수정(안 별표)

- 장애자용 화장실 → 장애인용 화장실, 담당 → 팀장
- 실·와·팀장실 → 실·과장실, 갱의실 → 탈의실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간,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기타

- 보내실 곳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 전화 : 054-650-6133, 팩스 : 054-650-6139
- 전자우편 : jh2920@korea.kr

라.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6호 중 “종업원50명”을 “종업원 30명”으로,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동식물 관련 생산·제조·가공 시설 및 생육·병해충 연구 또는 실증(實證)시설 등이 설치된 집적(集積)시설을 말한다]을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
위에서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
을 매각하는 경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군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2)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과장실	팀 장	직 원
군 본 청	99	38.88	17.92	7.65	7.2
읍 청 사	33	17.92	17.92	7.65	7.2
면 청 사	33	14.80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2)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읍면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 리 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민 원 실	$\{(6.55m^2 \times \text{민원담당공무원 수}) \times 1.1\} + \{(0.13m^2 \sim 0.2m^2 \times \text{민원인 수}) \times 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2 / \text{인}$	$11.52m^2 / \text{인}$	$8.64m^2 / \text{인}$	
자 료 실	$(0.3 \sim 0.4m^2) \times \text{공무원수}$			
창 고	$0.72m^2/\text{인} \sim 0.85m^2/\text{인}$			
전 산 실	$9.79m^2 \times \text{담당직원 수} \times 1.2$			
민 방 위 대 피 시 설	개소당 $660m^2$ 이상			평시 총무 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2)

실 명		설 계 기 준					
공 조 기 계 실	연 면 적	~3,000	3,000~ 7,500	7,500~ 13,000	13,000~18,0 00	18,000~23,0 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2$		$800m^2$		$1,000m^2$	
	층장비실	$6.6m^2$		$8.4m^2$		$10.2m^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 4,000	4,000~ 8,000	8,000~ 12,000	12,000~ 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 20,000	20,000~ 24,000	24,000~ 28,000	28,000~ 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 + 부속공간면적 + 설비관계면적) x 30~40%]

2. 군의회 청사

(단위 : m^2)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 의 장 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 원 장 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군 위원회 수 : 1개
회 의 실	b	본 회 의 장	의원 수 $\times 5$ + 방청객 수* $\times 1.5m^2$ 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times 3.3m^2$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 원 회 실	의원 수 $\times 8.2m^2$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 무 국 장 실	38.88 ~ 64.0 m^2	
		사 무 실	직원 수 $\times 7.2m^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m^2	
		대 기 실	의 원	의원 수 $\times 2.5m^2$
			기 자	50 m^2
			운 전 기 사	운전기사 수 $\times 1.8m^2$
	d	휴 게 실	의 원	의원 수 $\times 2m^2$
			직 원	직원 수 $\times 2m^2$
			방 청 객	방청객 수* $\times 2m^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m^2
		화 장 실		36~77 m^2
		기 타		예비실(50 m^2)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times 30\sim 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times 0.000015$ + 50

3. 군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구 분	공용면적 (기계실포함)	관리/사무	부대시설	계층별 전용실	공연	체육
배분비(%)	29.2	3.7	6.4	12.7	13.6	34.4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2)

구 분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958	
연면적 (Gross Area)	3,341	•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하는 공용면적은 $\pm 5 \sim 10\%$를 별도로 고려한다. •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69.2%	

1) 공연시설

(단위 : m^2)

구 분	시 설 명	면 적
극 장	객 석	160
	무 대	120
	연 습 실	30
	분 장 실 (남 · 여)	10
	분 장 실 전 용 화 장 실	3
	악 실 (1)	15
	악 실 (2)	-
	소 계 ①	338
부 속 시 설	도 구 비 치 창 고	40
	도 구 반 입 실	-
	영 사 실	20
	음 향 실	20
	기 기 실 (무 대)	-
	조 명 실	20
	측 벽 투 광 실	-
	방 송 중 계 실	-
	소 계 ②	100
합 계	계 ① + ②	438
	공 용 부 분	292
	합 계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2)

구 분	시 설 명	면 적
아 동 실	아 동 실 (1)	30
	아 동 실 (2)	-
	부 속 창 고	4
	소 계 ⑤	34
청 소 년 실	청 소 년 실 (1)	50
	청 소 년 실 (2)	-
	소 계 ⑥	50
노 인 실	노 인 실 (남)	30
	노 인 실 (여)	30
	휴 계 실	-
	주 방	-
	건 강 상 담 실	-
	소 계 ⑦	60
부 녀 실	부 녀 실 (1)	50
	부 녀 실 (2)	50
	부 녀 실 (3)	-
	소 계 ⑧	100
공 용 시 설	강 의 실	60
	회 의 실 (1)	70
	회 의 실 (2)	35
	회 의 실 (3)	-
	회 의 실 (4)	-
	다 목 적 실	-
	주 방	-
	기 자 재 창 고	-
	전 시 코 너	-
	소 계 ⑨	165
합 계	계 ⑤ ~ ⑨	409
	공 용 부 분	220
	합 계	629

3) 부대시설

(단위 : m^2)

구 분	시 설 명	D유형 면적
전 시 시 설	전 시 실	54
	작 업 실	12
	창 고	12
	소 계 ⑩	78
도 서 시 설	도 서 실	100
	소 계 ⑪	100
식 당 / 휴 게 시 설	식 당	-
	주 방 및 창 고	-
	휴 게 실	28
	소 계 ⑫	28
합 계	계 ⑩ ~ ⑫	206
	공 용 부 분	88
	합 계	294

4) 체육시설

(단위 : m^2)

구 분	시 설 명	D유형 면적
경 기 장	경 기 장	646
	탈 의 실 (남)	12
	샤 워 실 (남)	12
	탈 의 실 (여)	6
	샤 워 실 (여)	6
	부 속 실 (1)	20
	부 속 실 (2)	30
	대 기 실	15
	장 비 실	60
	무 대 (집 회 용)	95
	트 레 이 닝 실 (소 체 육 실)	-
	소 계 ③	902
관 램 석	관 램 석	210
	상 부 발 코 니	-
	소 계 ④	210
합 계	계 ③ + ④	1,112
	공 용 부 분	278
	합 계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2)

구 분	시 설 명	D유형 면적
사 무 실	관 리 사 무 실	22
	관 장 실	30
	응 접 및 탕 비 실	26
	소 회 의 실	10
	숙 직 실	10
	안 내 인 방 송 코 너	-
	직 능 단 체 사 무 실 (1)	50
	직 능 단 체 사 무 실 (2)	-
	소 계 ⑬	148
합 계	계 ⑬	148
	공 용 부 분	80
	합 계	228

4. 보건소

(단위 : m^2)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진료활동	a	접 수 / 수 납	13.86
		의 무 기 록 창 고	10.89
		대 기 공 간	36.00
		약 국 조 제 실	11.88
		약 국 창 고	11.88
		일 반 진 찰 실	35.64
		처 치 실	17.80
		치 과 진 찰 실	27.54
		치 과 장 비 실	2.70
		치 과 용 암 실	2.16
		소 독 실	8.91
		예 방 접 종 실	17.82
		소 아 놀 이 실	9.90
		수 유 실	7.92
		화 장 실	31.68
		장 애 인 용 화 장 실	4.86
보건사업	b	결 핵 관 리 실	17.82
		상 담 실	35.64
		방 사 선 실	49.92
진료지원	c	임 상 검 사 실	65.34
사무부문	d	소 장 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전 실 (탕 비 실)	9.90
		소 회 의 실	17.82
		사 무 실	직원 수 $\times$ 7.2 m^2
		다 목 적 실	108
		창 고	52.47
		여 자 휴 게 실	40
		당 직 실	13.86
		화 장 실	17.82
설 비	e	기 계 실 및 전 기 실	44
연계공간		로 비 · 복 도 · 계 단	(a+b+c+d+e) $\times$ 30~40%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m^2)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고
업무공간	a	기 관 장 실	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 × 7.2	
소요공간	b	조 직 배 양 실	82.5 내외	
		중 합 검 정 실	72.6 내외	
		가 축 질 병 진 단 실	36.3 내외	
		꽃 가 루 은 행	99 내외	
		여 성 기 능 교 육 실	66 내외	
		화 상 정 보 시 스 템	66 내외	
		농기계수리지원센터	330내외	
		예 비 실	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공간	c	휴 게 실	직원 수 × 2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		로 비 · 복 도 · 계 단	(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 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 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 다. 1. ~ 5. (생 략) 6. 상시 <u>종업원50명</u> 이상을 고 용하거나 원자재의 <u>50퍼센트</u>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 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 하는 때 7. (생 략) <u><신 설></u>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종업원 30명</u> ----- ----- <u>30퍼센트</u> ----- ----- ----- 7. (현행과 같음) 8. <u>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농 업 발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 [동식물 생산·제조·가공 시설 및 생육·병해충 연구 또는 실증(實證)시설 등이 설치된 집적(集積)시설을 말한다]을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 ·개인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u>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 ③ (생 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 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u>
<u>④ · ⑤ (생 략)</u>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u>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로 한다)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u> <u>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u>	<u>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u>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u>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u> <u><삭 제></u>

<u>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u> <u>4회 분납</u>	<u><삭 제></u>
③・④ (생 략)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9. (생 략) <u><신 설></u>	③・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5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사문화된 위원회의 목적과 결정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합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문화된 위원회 목적 및 결정 사항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나. 당연직 위원 구성 개편(안 제2조제3항)

- 실과소장 → 본청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다. 회의운영 방식 일부 조정(안 제4조제3항)

- 의안 제출 시기 조정 : 24시간 전 제출 → 2일 전 제출
- 의안 배부 : 유인물 → 의안 자료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oit2933@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감사실(전화: 054-650-60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사문화된 위원회의 목적과 결정 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문화된 위원회 목적 및 결정 사항 정비(안 제1조, 안 제3조)

나. 당연직 위원 구성 개편(안 제2조제3항)

- 실과소장 → 본청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다. 회의운영 방식 일부 조정(안 제4조제3항)

- 의안 제출 시기 조정 : 24시간 전 제출 → 2일 전 제출
- 의안 배부 : 유인물 → 의안 자료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7월 중 실시 예정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행복과 의뢰 예정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심의·결정하기 위한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연직위원은 실과
소장”을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당연직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①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
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정조정위원회”를 “위원회”로, “결정한다”를
“조정·심의·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책”을 “정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
지 및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
항

3. 군정 주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4조제3항 중 “24시간”을 “2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유인물을”을 “의안 자료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기획업무담당주사가”를 “기획업무담당팀장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팀장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u>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제1조(목적) <u>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심의·결정하기 위한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u>	제2조(구성) ① <u>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당연직위원은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	③ <u>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u> ----- ----- ----- -----.
④ <u>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u>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u>	④ ----- ----- <u>당연직 위원</u> ----- ----- -----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 제
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 7. 삭 제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
----- 조정·심의·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 정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정책 수립·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u>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 야 할 사항</u>	
11. 삭 제	
<u>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u>	<삭 제>
<u>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u>	<삭 제>
<u>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u>	<삭 제>
<u>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u>	<삭 제>
<u>16. 에너지절약 추진협약에 관 한 사항</u>	<삭 제>
<u>17.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u>	<삭 제>
<u>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 선·발전에 관한 사항</u>	<삭 제>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 ①·② (생 략)	제4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회 의 개최 <u>24시간</u>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u>2일</u> -----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 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 선 순위에 의안 번호를 부여하 고 그 <u>유인물을</u> 회의 개최 전일 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	④ ----- ----- ----- ---- <u>의안 자료를</u> ----- -----

다. ⑤ ~ ⑧ (생략)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u>기획업무 담당주사가</u>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u>업무담당주사가</u> 간사가 된다. ③ (생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기획업무담당팀장이</u> ----- ----- --. ----- ----- <u>업무담당팀장이</u> -----. ③ (현행과 같음)
--	--